

| 개정 전 | 개정 후 | | |
|---|------------|---|--|
| <p>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</u> <u>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</u> <u>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</u> <u>액으로 한다.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계산식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 vertical-align: top;"> $\text{연세액} \times \text{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}/365(\text{윤년의 경우에는 } 366) \times \text{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}$ </td></tr> </table> | 계산식 | $\text{연세액} \times \text{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}/365(\text{윤년의 경우에는 } 366) \times \text{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}$ | |
| 계산식 | | | |
| $\text{연세액} \times \text{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}/365(\text{윤년의 경우에는 } 366) \times \text{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}$ | | | |
| ⑤ (생략) | ⑤ (현행과 같음) | | |